

2026학년도 제8차

규정심의위원회

- 일 시: 2026. 6. 4.(목), 오후 3시
- 장 소: 기획팀 회의실(문화관 204호)



회의 개요 및 안건

- ◎ 일 시: 2026. 6. 4.(목), 오후 3시
- ◎ 장 소: 기획팀 회의실(문화관 204호)
- ◎ 안 건

연번	안건	입안부서	배석	예상시간
1	심의 「스포츠단운영규정」 일부 개정	스포츠지원센터(진천)	스포츠지원센터장(진천)	'15
2	심의 「우석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장	'15
3	심의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 개정	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장	'15
4	심의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	교학팀	교학팀장	'15
5	심의 「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규정」 제정	교학팀	교학팀장	'25

◎ 추후 일정

심의기구(순)	일정
교무위원회	- 2026. 6. 9.(화)
대학평의위원회	- 학칙 해당
법인이사회	- 직제, 인사, 보수에 관련한 규정 해당
차기 규정심의회의	- 2026. 7. 9.(목), 오후 3시

※ 학칙 및 직제규정: 입안예고공청회 3일 이상 의견조회 시행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스포츠단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스포츠지원센터(진천)	관련부서	학생복지팀, 생활관											
부서간 협의 결과	• 협의완료													
대학평의회	• 해당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대학 운동부는 학생선수 육성, 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 학생 모집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 등 대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운동부 운영을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 및 생활관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 재정 여건 및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우석대학교 장학위원회규정 제2조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현행</td><td>· 육성종목 학생선수에 대하여 장학금 및 생활관비는 외부에서 조달된 재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td></tr><tr><td>개정(안)</td><td>· 육성종목 학생선수에 대하여 장학금 및 생활관비를 지원한다.</td></tr><tr><td rowspan="2">주요내용</td><td>· 학생선수 지원체계 운영의 탄력성 확보</td></tr><tr><td>· '외부에서 조달된 재원 한도' 문구 삭제</td></tr><tr><td></td><td>· 대학 재정 여건에 따른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성 확보</td></tr></table>			구분	내용	현행	· 육성종목 학생선수에 대하여 장학금 및 생활관비는 외부에서 조달된 재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안)	· 육성종목 학생선수에 대하여 장학금 및 생활관비를 지원한다.	주요내용	· 학생선수 지원체계 운영의 탄력성 확보	· '외부에서 조달된 재원 한도' 문구 삭제		· 대학 재정 여건에 따른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성 확보
	구분	내용												
	현행	· 육성종목 학생선수에 대하여 장학금 및 생활관비는 외부에서 조달된 재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안)	· 육성종목 학생선수에 대하여 장학금 및 생활관비를 지원한다.												
	주요내용	· 학생선수 지원체계 운영의 탄력성 확보												
· '외부에서 조달된 재원 한도' 문구 삭제														
	· 대학 재정 여건에 따른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성 확보													
	※ 장학금 및 생활관비 지원은 관련 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 절차를 거쳐 운영													
기대효과	• 학생선수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외부재원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운동부 운영 기반 마련 • 우수 학생선수 유치 및 대학 스포츠 경쟁력 강화 • 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 기여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치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스포츠단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스포츠단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36조(기타)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36조(기타) ①(현행과 같음)
②스포츠지원센터(진천) 육성종목 학생선수에 대하여 장학금 및 생활관비는 외부에서 조달된 재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스포츠지원센터(진천) 육성종목 학생선수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스포츠단 운영위원회 심의 및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③스포츠지원센터(진천) 육성종목 학생선수에 대하여 생활관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활관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교내장학금시행규칙」

제32조(위임) 본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생활관규정」

제14조(생활관비) ①관생의 생활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관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5조(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①각 단과대학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한의과대학, 약학대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 한의예과 2년, 한의학과 4년으로 구분한다. 2. 약학대학(한약학과 제외)은 6년으로 하되, 본교 또는 타교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 전공교육 4년으로 구분한다. ②<삭제 2013.11.19.>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9.) 1. 재학 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1학기 또는 1년 단축 2.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1년 단축 제55조(학위수여) ①다음 각호의 자격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 또는 별지서식 제1-2호의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 1. 학과(부)별 이수학점총괄표에 의한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 2. 8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조기졸업 대상자는 제외) <u><문구 추가></u> 3.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졸업논문 대체가 인정된 자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제외) (개정 2023.12.19.) 4. TOPIK 성적 4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거나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국인에 한함). 단, <u><문구 추가></u> 교환학생,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의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5. 외국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양교의 학점이 수 및 졸업에 관한 기타요건을 충족한 자 ②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의 경우, 본교에 해당 학과(부)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별지서식 제 1-3호의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15조(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①각 단과대학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한의과대학, 약학대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 한의예과 2년, 한의학과 4년으로 구분한다. 2. 약학대학(한약학과 제외)은 6년으로 하되, 본교 또는 타교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 전공교육 4년으로 구분하며, <u>약학과(6년제)는 본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6년제로 운영한다.</u> ②<삭제 2013.11.19.>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9.) 1. 재학 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1학기 또는 1년 단축 2.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1년 단축 제55조(학위수여) ①다음 각호의 자격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 또는 별지서식 제1-2호의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 1. 학과(부)별 이수학점총괄표에 의한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 2. 8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u>또는 약학과(6년제)는 12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u> (조기졸업 대상자는 제외) 3.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졸업논문 대체가 인정된 자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제외) (개정 2023.12.19.) 4. TOPIK 성적 4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거나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국인에 한함). 단, 교환학생,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의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고, <u>외국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예외로 한다.</u> 5. 외국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양교의 학점이 수 및 졸업에 관한 기타요건을 충족한 자 ②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의 경우, 본교에 해당 학과(부)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별지서식 제 1-3호의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

현행	개정(안)
1.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4.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과(부)의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자 ③학사학위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④제1항 제3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2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다중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정해진 전공학위를,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학위증서에 표기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7.10.24.)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4.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과(부)의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자 ③학사학위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④제1항 제3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2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다중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정해진 전공학위를,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학위증서에 표기한다.
<u>신설</u>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미래융합대학
부서간 협의 결과	• 미래융합대학 내 모집단위간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 조문 변경을 요청함.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사범대학의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정원의 포함’ 문구 삭제 필요. • 선발인원 및 방법에서 ‘미래융합대학(정원의 포함)’ 문구 삭제 필요. • 미래융합대학 내 모집단위 이동은 인원 제한없이 선발할 수 있고, 타 단과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으로 이동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③ 모집단위 이동 또는 전과 관련 조문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사범 계열)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의료 계열)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2024. 2. 20.>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 삭제), 작업치료학과 및 물리치료학과로의 이동은 모집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수정 • 미래융합대학 내 모집단위간 이동은 인원 제한없이 선발할 수 있으나, 타 단과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으로 이동은 모집정원(정원의 포함)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고 수정		
기대효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학내 규정 일치 • 미래융합대학 재학 중 학과의 이동과 학생의 전공선택 자유를 유지 • 미래융합대학 전공 특성상, 타 단과대학에서 이동 시 해당 조건을 갖춘 학생만을 선발 취지 유지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자료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장 학적변동 제1절 모집단위간 이동 등 제16조(이동 횟수 및 신청시기) ①모집단위간 이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모집단위간 이동은 6월초 또는 12월초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편입생이 최초 입학한 학기에 모집단위간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정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③(신설 2021.1.27.), <삭제 2024.2.26.> 제17조(선발인원 및 방법) ①선발인원은 각 모집단위별로 인원 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 <u>사범대학(정원의 포함), 미래융합대학(정원의 포함)</u>, 작업치료학과 및 물리치료학과로의 이동은 모집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삭제 2018.2.24.) 제18조(모집단위간 이동 자격) ①모집단위간 이동은 전학년 신청할 수 있다. ②미래융합대학으로 이동을 신청하는 학생은 입학 당시 모집요강의 미래융합대학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제19조(모집단위간 이동절차) 모집 단위간 이동을 희망하는 자는 Academic Advisor의 상담과 지원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모집단위간 이동신청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학과(부)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학점 이수) ①모집단위간 이동이 허용된 자는 해당학과(부)의 최소 전공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장 학적변동 제1절 모집단위간 이동 등 제16조(이동 횟수 및 신청시기) ①모집단위간 이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모집단위간 이동은 6월초 또는 12월초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편입생이 최초 입학한 학기에 모집단위간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정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③(신설 2021.1.27.), <삭제 2024.2.26.> 제17조(선발인원 및 방법) ①선발인원은 각 모집단위별로 인원 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 <u>사범대학</u>, 작업치료학과 및 물리치료학과로의 이동은 모집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u>미래융합대학 내 모집단위간 이동은 인원 제한없이 선발할 수 있으나, 타 단과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으로 이동은 모집정원(정원의 포함)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u> 제18조(모집단위간 이동 자격) ①모집단위간 이동은 전학년 신청할 수 있다. ②<u>타 단과대학에서</u> 미래융합대학으로 이동을 신청하는 학생은 입학 당시 모집요강의 미래융합대학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제19조(모집단위간 이동절차) 모집 단위간 이동을 희망하는 자는 Academic Advisor의 상담과 지원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모집단위간 이동신청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학과(부)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학점 이수) ①모집단위간 이동이 허용된 자는 해당학과(부)의 최소 전공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전직 학과(부)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교과목인 경우에는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유사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과(부)의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의 교과목의 학점은 자유선택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1조(장학금 지급제한) <삭제 2021.1.27.> 제21조의2(모집단위 명칭변경에 따른 소속변동) ①모집단위 명칭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모집단위에 소속된 학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모집단위의 명칭변경에 따른 소속 변동은 모집단위간 이동으로 보지 않는다.	②전직 학과(부)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교과목인 경우에는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유사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과(부)의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의 교과목의 학점은 자유선택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1조(장학금 지급제한) <삭제 2021.1.27.> 제21조의2(모집단위 명칭변경에 따른 소속변동) ①모집단위 명칭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모집단위에 소속된 학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모집단위의 명칭변경에 따른 소속 변동은 모집단위간 이동으로 보지 않는다.
<u><신설></u>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학팀		관련부서		해당 학과			
부서간 협의 결과	• 협의 완료							
대학평의위원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 일반대학원 정원조정 및 경영문화대학원 학과 신설 - 입학정원 조정							
	조정 대학원		캠퍼스	과정	배정 인원	기존 인원	최종 인원	
	FROM	TO						
	일반대학원 전주캠퍼스 석사과정 (-10명)	일반대학원 전주캠퍼스 박사과정 (+3명)		전주	석사	-10	85	75
					박사	3	41	44
		일반대학원 진천캠퍼스 석사 및 박사과정 (+7명)		진천	석사	4	13	17
					박사	3	8	11
계				-	147	147		
- 학과신설: 경영문화대학원 미술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신설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2026.06.02)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별표 1] • 일반대학원 정원 조정 (총정원 147명 유지) - 전주캠퍼스: 석사과정 10명 감원(85명 → 75명), 박사과정 3명 증원(41명 → 44명) - 진천캠퍼스: 석사과정 4명 증원(13명 → 17명), 박사과정 3명 증원(8명 → 11명) • 경영문화대학원 편제 변경 - 미술심리상담학과(석사학위과정) 신설 - 소속 학과 확대(3개 학과→ 4개 학과) 및 총 입학정원(10명) 동결 • 적용 시점: 개정된 학과 편성 및 정원은 2026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기대효과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진행중)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u>별표 1</u>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11.24., 2024.5.30., 2024.10.28., 2024.12.26., 2025.01.21., 2025.2.27., 2025.4.29., 2025.5.30., 2025.6.26., 2025.8.25., 2025.11.13., 2026.3.25., 2026.5.7.)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변경 2002.2.15., 2004.1.15) 1. 교육부장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0.3.3.)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학 제 (2006.8.4.) 5.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신설 2025.6.26.) ③각 대학원은 외국인을 위한 전담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3.25.)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u>별표 1</u>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11.24., 2024.5.30., 2024.10.28., 2024.12.26., 2025.01.21., 2025.2.27., 2025.4.29., 2025.5.30., 2025.6.26., 2025.8.25., 2025.11.13., 2026.3.25., 2026.5.7., <u>2026.00.00.</u>) ②~③ 현행과 동일
	<u>부 칙</u>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적용례) 제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6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u> <u>제3조(학과 신설) 경영문화대학원(전주) 미술심리상담학과(석사학위과정)</u>

현행					개정(안)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1. 일반대학원 - 전주캠퍼스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1. 일반대학원 - 전주캠퍼스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인문 사회	교육학과		교육학과		인문 사회	교육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글로벌경영학과		-			글로벌경영학과		-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과	
	AB기반교육문화콘텐츠학과		AB기반교육문화콘텐츠학과			AB기반교육문화콘텐츠학과		AB기반교육문화콘텐츠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		경영학과			-		경영학과	
	-		관광경영학과			-		관광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		-			-		-	
	예술경영학과		-			예술경영학과		-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자연 과학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자연 과학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관광문화경영학과		-			관광문화경영학과		-	
	군사학과		군사학과			군사학과		군사학과	
	약학과	85	약학과	41명		약학과	75	약학과	44명
	식품생명공학과	20명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20명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한약학과			한약학과		한약학과	
	-		-			-		-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		-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		-	
	간호학과(감염관리전문간호사)		-			간호학과(감염관리전문간호사)		-	
	재활학과		-			재활학과		-	
	-		-			-		-	
	물리치료학과		-			물리치료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동아시아조경학과		조경학과		공학	동아시아조경학과		조경학과	
공학	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화장품공학과		제약·화장품공학과			제약·화장품공학과		제약·화장품공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수소모빌리티공학과		-			수소모빌리티공학과		-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의학	한의학학과		한의학학과			한의학학과		한의학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예체능	체육학과		체육학과	
예체능	-		-			-		-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		스포츠과학과			-		스포츠과학과	
	-		-			-		-	
계	31개 학과	85명	27개 학과	41명	계	31개 학과	75명	27개 학과	44명
※ () 안의 인원은 가정전문간호사과정(10명),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10명) 정원임					※ () 안의 인원은 가정전문간호사과정(10명),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10명) 정원임				

현행					개정(안)				
- 진천캠퍼스					- 진천캠퍼스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인문사회	경영학과	13명	-	8명	인문사회	경영학과	17명	-	11명
	ESG·공공정책학과		ESG·공공정책학과			ESG·공공정책학과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	
공학	컴퓨터공학과		-		공학	컴퓨터공학과		-	
	건설공학과		건설융합시스템학과			건설공학과		건설융합시스템학과	
예체능	스포츠융합학과		스포츠융합학과		예체능	스포츠융합학과		스포츠융합학과	
	예술학과*		-			예술학과*		-	
계	7개 학과	13명	3개 학과	8명	계	7개 학과	17명	3개 학과	11명
※ 예술학과*는 외국인전담학과임					※ 예술학과*는 외국인전담학과임				
2. 교육대학원: 현행과 동일					2. 교육대학원: 현행과 동일				
3. 경영문화대학원					3. 경영문화대학원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가 족 복 지 학 과 ESG경영학과		10명			가 족 복 지 학 과 ESG경영학과		10명		
응용행동분석학과 (신설)					응용행동분석학과 미술심리상담학과				
3개 학과		10명			4개 학과		10명		
4. 국방정책대학원: 현행과 동일					4. 국방정책대학원: 현행과 동일				
5. 소방방재대학원: 현행과 동일					5. 소방방재대학원: 현행과 동일				
6. 지역혁신융합경영대학원: 현행과 동일					6. 지역혁신융합경영대학원: 현행과 동일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규정(안)

[제정 2026.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3조에 따라 대학원 연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이하 “석사연계과정”)은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계과정(이하 “박사연계과정”)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모집인원) ① 석사연계과정은 석사과정인, 박사연계과정은 석·박사통합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석사연계과정의 모집인원은 각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박사연계과정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선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원을 일반전형 모집인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4조(지원자격) ① 연계과정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학부과정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6년제 학과 재학생은 제외한다)

2. 8차 학기 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3. 학부과정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연계과정 지원자는 일반전형에 동시 지원 할 수 없다.

제5조(모집시기 및 전형방법) ① 학생의 모집은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 각 학과에서 학부과정 재학 중 성적, 추천내용, 연구활동계획서,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별지 제7호 서식)

③ 조기졸업자는 5학기 말, 일반졸업자는 6학기 말 또는 7학기 말에 과정 신청을 한 자

④ 대학원장은 매 학기 말까지 전형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서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학부과정 지도교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연구활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5.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제7조(결과 통보) ① 대학원장은 선발 결과를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학생 및 소속 학과(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락 여부를 대학원 교학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업연한) ① 각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연계과정 : 6년

2. 박사연계과정 : 8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이 단축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1년
2. 석·박사통합과정: 1.5년

제9조(학점이수) ①연계과정생은 학부과정 재학 중 대학원 연계과정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원 입학 후 심사를 거쳐 연계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연계과정의 이수학점은 각 학위과정의 졸업학점을 합산한 학점으로 한다.

③과정의 중도 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연계과정 운영 등) ①대학원 주임교수는 연계과정생에 대해 학기 초에 연계과정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지원 시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연구활동보고서를 대학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생이 대학원 입학 전 해당 대학원 학과가 모집중지된 경우에는 대학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의 유사학과로 입학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원 유사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연계과정포기자 및 탈락자)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과정포기자 및 탈락자로 본다.

1. 자퇴 및 제적자
2. 학부과정 미졸업자
3. 대학원 입학 포기자
4. 대학원 재학 중 연계과정 포기자
5. 연구활동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연계과정이 지속될 수 없다고 학부 지도교수가 판단한 자
6.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과정 진행이 부적합한 것으로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 자

②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까지 포기원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 서식)

③제1항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학과(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후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과정포기자 및 탈락자가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연계과정생이 과정을 포기하고 일반 석사과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당해 학년도 석사과정 여석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박사연계과정생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2조(대학원 입학) ①연계과정 지원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학부 학적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졸업요건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와 대학원 입학지원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학부과정 졸업과 동시에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제13조(휴학)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이 허가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복무, 임신 및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제14조(등록) ①연계과정생은 소정의 등록기간에 각 과정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학원 입학 후 석사연계과정생은 4학기 이내에, 박사연계과정생은 8학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할 경우 수

료시까지 추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박사연계과정생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박사과정으로 인정하며, 해당 학기부터 박사과정 등록금을 적용한다.

④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석사연계과정생은 제9조 제3항에 따라 인정된 학점 외 매학기 최소 3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해야 한다.

제15조(학생에 대한 특례) ①대학원 연계과정으로 입학 시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연계과정생은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연계과정생은 학부 재학 중에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16조(사무분장) 연계과정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선발 및 입학: 대학원 교학팀. 단, 외국인의 경우는 글로벌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2. 학부과정 장학지원: 학생복지팀

3. 학부과정 중 대학원 교과목 수강관리: 학사관리팀

4. 연계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대학원 교학팀

제17조(보칙 및 준용) ①연계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대학원 지원학과			
성명		주민번호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번		이수학년/학기	
총평균성적		총이수학점	학점
주소	(E-mail :)		
휴대폰			
학업계획	※ 학부 재학중 대학원 학점 취득 등 학점이수계획 중심으로 작성		

위와 같이 학·석사 석사연계과정에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첨부 1. 추천서 1부, 2. 성적표 1부 3. 연구활동계획서 1부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접수증			
성명		주민번호	
대학원 지원학과			
위와 같이 학·석사 석사연계과정에 지원·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_____ (인)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지원서

대학원 지원학과			
성명		주민번호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번		이수학년/학기	
총평균성적		총이수학점	학점
주소	(E-mail :)		
휴대폰			
학업계획	※ 학부 재학중 대학원 학점 취득 등 학점이수계획 중심으로 작성		

위와 같이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에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첨부 1. 추천서 1부, 2. 성적표 1부 3. 연구활동계획서 1부.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지원 ·접수증			
성명		주민번호	
대학원 지원학과			
위와 같이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에 지원·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_____ (인)

학과 지도교수 추천서

대학원 지원학과		지원과정	☐ 석사연계과정 ☐ 박사연계과정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성명		학번		학년	

추천사유
200 년 월 일 추천자: _____ 대학 _____ 학부(과) _____ 교수 (서명)

- ※ 1. 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박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계과정

연구활동계획서

대학원 지원학과		지원과정	☐ 석사연계과정 ☐ 박사연계과정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성명		학번		학년	

연구활동계획
1. 자기소개
2. 진학 동기
3. 졸업 후 진로
4. 전공 연구 계획

200 년 월 일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지원자 학부졸업요건확인서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성명		학번		

학·석사석사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생으로 지원을 위한 (조기)졸업요건 충족 확인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성적

기취득학점			총평균 성적	금학기 신청학점			총 학점		
학부	학점		/100	학부	학점		학부	학점	
대학원	학점	학점		대학원	학점	학점	대학원	학점	학점

2. (조기)졸업 예정일 :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첨부: 성적증명서 1부

학부 학적 담당자확인
(/ /)

우석대학교총장 귀하

대학원연계과정입학지원서

전형구분	☐ 학·석사연계과정 ☐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수험번호		사진 (3.5cm×4.5cm) 탈모상반신 3개월 이내 촬영
지원학과 (전공)	()				
성명	(한글) (영문)				
주민번호			국적		
거주지주소			자택전화		
e-mail			본인휴대폰		
병적사항	군필() 미필() 면제() 여학생() 기타()				
취득성적	구분	기취득학점	총평균성적	금학기 신청학점	총학점
	학부	학점	/100	학점	학점
	대학원	학점		학점	학점
	계	학점		학점	학점
학력사항	년 월 일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입학	
	년 월 일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편입	
	년 월 일	대학 학부(과)	전공	졸업예정	
보호자 및 가족사항	관계	성명	성별	연락처	
본인은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우석대학교총장 귀하					
지원자 _____ (서명)					

서 약 서

□ 지원자 인적사항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번		성명	연락처	
주소				

□ 서약서

대학원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11조(연계과정포기자 및 탈락자)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과정포기자 및 탈락자로 본다.

1. 자퇴 및 제적자
2. 학부과정 미졸업자
3. 대학원 입학 포기자
4. 대학원 재학 중 연계과정 포기자
5. 연구활동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연계과정이 지속될 수 없다고 학부 지도교수가 판단한 자
6.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과정 진행이 부적합한 것으로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 자

②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까지 포기원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 서식)

③제1항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학과(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후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과정포기자 및 탈락자가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연계과정생이 과정을 포기하고 일반 석사과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당해 학년도 석사과정 여석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박사연계과정생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4조(등록) ①연계과정생은 소정의 등록기간에 각 과정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학원 입학 후 석사연계과정생은 4학기 이내에, 박사연계과정생은 8학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할 경우 수료시까지 추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박사연계과정생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박사과정으로 인정하며, 해당 학기부터 박사과정 등록금을 적용한다.

④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석사연계과정생은 제9조 제3항에 따라 인정된 학점 외 매학기 최소 3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해야 한다.

본인은 위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_____ (서명)

학·석사 및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지원자 평가표

학부(과)		지원학과		성명	
평가항목		점수			
성적		/40			
연구활동계획서		/20			
면접		/40			
합계					
의견란					

-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합격인원이 모집정원보다 많은 경우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_____ (서명)

대학원장 귀하

